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의원 대표발의)

검 토 보 고

I. 주요내용

- 교육공무원이 대학(대학원 포함) 및 고등학교에 입학(편입학 포함)하는 학생 선발과 관련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침해하는 부정행위를 한 경우 이에 대한 징계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함(안 제52조제6호 신설).

II. 검토의견

개정안에 대하여 일부 체계·자구상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으며, 교육부와 협의하여 다음과 같은 수정의견을 마련함.

첫째, 입학·편입학생 선발의 방식이 반드시 선발시험만을 의미하지는 않고, 학교생활기록부, 대학수학능력시험, 신체검사, 자기소개서 등 다양한 방식을 포괄하고 있으므로,¹⁾ 선발시험보다는 ‘선발 과정’으로 포괄적으로 지칭할 필요가 있음.

1)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5조(입학전형자료) ①**대학**(교육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입학자를 선발하기 위하여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이하 “**대학수학능력시험**”이라 한다)의 성적, 대학별고사(논술 등 필답고사, 면접·구술고사, 신체검사, 실기·실험고사 및 교직적성·인성검사를 말한다)의 성적 등 교과성적 외의 자료(자기소개서는 제외한다) 등을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학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법 제34조에 따른 특별전형으로 선발하는 때에는 자기소개서를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1. 제29조제2항제6호 및 제7호의 사람
2. 제29조제2항제14호다목의 사람(교육대학에 입학하려는 사람은 제외한다)
3. 30세 이상인 사람

둘째,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²⁾에는 ‘대학’이 포함되고, 대학원 및 대학원대학 역시 ‘대학’에 포함되므로 대학원과 대학원대학을 학교와 별개로 나열할 필요는 없음.

현행	개정안	수정의견
제52조(징계사유의 시효에 관한 특례) 교육공무원에 대한 징계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제52조(징계사유의 시효에 관한 특례) ----- ----- ----- ----- ----- ----- -----.	제52조(징계사유의 시효에 관한 특례) ----- ----- ----- ----- ----- ----- -----.
1. ~ 5.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1. ~ 5. (현행과 같음)
<신설>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에 입학(편입학을 포함한다)할 학생 선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에 입학(편입학을 포함한다)할 학생 선

2) 「고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대학
2. 산업대학
3. 교육대학
4. 전문대학
5.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6. 기술대학
7. 각종학교

제29조(대학원) ①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 및 원격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학원을 둘 수 있다. 다만, 사이버대학은 교육여건과 교육과정의 운영에 대한 평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30조(대학원대학) 특정한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제2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학원만을 두는 대학(이하 “대학원대학”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u>발과 관련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선발시험에 부당하게 개입하거나 선발시험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여 학생 선발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u> 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 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학교	<u>발과 관련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선발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거나 선발 과정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여 학생 선발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u> 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을 포함한다) 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학교
--	--	--

(전문위원 이 은 정)